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육활동 이용권 지원 근거 신설 등〉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6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활동 이용권 지원 근거 신설	3
2.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근거 마련	8
※ 참고자료	10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현황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운영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6. 4. 30.
3. 회 부 일: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

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활동 이용권 지원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체육활동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3(체육활동 이용권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참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체육강좌 수강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시설

4.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강좌 또는 체육프로그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활동 관련 시설 또는 프로그램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공공·민간 체육시설, 학교,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부정사용 방지, 이용실적 관리 및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범위, 시설 연계,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유소년의 체육 진흥, 직장 체육 진흥,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시책 마련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¹⁾’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였고 2026년 사업예산은 1,184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개정안은 체육활동 이용권 제공·관리, 이용권 사용 시설 지정, 유관시설 연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의 범위를 더욱 넓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청년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체육복지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상 지원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이용권 사용 체육시설 확대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보다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²⁾.

1) [참고자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현황

2) 동 사업에 대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권 미사용 등의 사유로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법령으로 지원대상과 사용처를 열거하는 경우 지원 대상 등 확대 시 법령 개정을 수반하게 되어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②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 변화 양상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사용처의 유연한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탄력적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정안 입법에 신중한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이용권 지원 사업은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집행 중이므로 현 규정·체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이용권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16조의3제2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또다시 부령으로 위임³⁾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지

바 있음('25년도 예산 문체위·예결위 검토보고서, '25년도 문체위 소관 예산안 부대의견, '26년도 예정처 예산안 분석 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원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법문언상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2.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처를 ‘노인 및 유소년’에서 ‘노인,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노인 및 <u>유소년의 체육활동 지원</u>	11의2. ----- <u>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체육활동</u> -----
11의3. ~ 12. (생략)	11의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 등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22조제1항제11호4)에 따라 현재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설 조항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의 ‘체육활동 취약계층’에는 청소년과 청년 외에도, 기금 사용을 통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참고자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현황('26.3. 기준)(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향유기회 제공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09년~), 장애인('19년~)
- (사업예산) '26년 118,422백만원(추경 포함)
- * 사업비: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지방비=7:3) /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정액/ 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원내용 및 대상^{'26년 기준})

구분	내용
지원 내용	○ 1인당 매월 10.5만원(저소득층), 11만원(장애인)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21년부터 복수강좌수강 가능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 '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지원 자격	<저소득층> ○ 지원연령 : 5 ~ 18세 유·청소년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유청소년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유청소년 <장애인> * '24년부터 5~18세 장애인은 장애인이용권만 신청 가능 ○ 지원연령 : 만 5 ~ 69세 장애인 ○ 수급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연도별 이용인원 및 예산(예산액: 사업비 및 운영비 포함) ['26. 3월말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3
저 소 득 층	신청인원명	46,204	56,673	65,360	67,225	75,840	86,002	107,425	128,995	115,711
	수혜인원명	40,826	52,129	57,122	63,468	71,089	82,721	105,558	127,794	110,174
	예산액(백만원)	17,897	20,142	22,018	24,909	29,639	47,138	73,599	101,353	87,569
장 애 인	신청인원명	-	-	2,387	3,508	7,014	14,419	25,356	50,977	63,386
	수혜인원명	-	-	2,310	3,289	6,223	11,485	22,636	30,150	29,551
	예산액(백만원)	-	-	2,650	2,745	3,597	6,621	11,633	18,991	30,853

* '25년의 경우 정산완료 전으로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수혜인원 미포함

□ 종목별 체육시설(가맹시설) 현황

['26. 3월말 기준]

< 저소득층 >

구분	태권도	헬스	필라테스	복싱	합기도	축구	기타	합계
시설 수	7,945	2,221	1,608	1,377	1,043	845	9,804	24,843
비율(%)	32.0	8.9	6.5	5.5	4.2	3.4	39.5	100

< 장애인 >

구분	태권도	헬스	필라테스	탁구	수영	합기도	기타	합계
시설 수	2,644	1,136	716	547	427	334	3,891	9,695
비율(%)	27.3	11.7	7.4	5.6	4.4	3.4	40.2	100